

KLSI

ISSUE PAPER

제 93 호
2018-8호
(2018.06.19.)

www.klsi.org

최저임금 적정수준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최저임금 추이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 약>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 29.1~37.4%(20~26위), 중위값 기준으로 42.0~47.1%(17~21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1> 참조).

<표 1> 2016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순위) 차이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인 이상 상용직		1인 이상 풀타임		5인 이상 풀타임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대비	34.9	29.1	40.0	34.9	37.4	32.0
	중위값대비			50.7	47.1	46.8	42.0
순위	평균값대비	21	26	16	21	20	24
	중위값대비			13	17	17	21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얼마가 될까?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임금 평균값의 40.0%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8.2%, 5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4.3%다.

<표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

구분		연도	시간당 임금(원)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대비	통상임금 대비
사업체 노동력조사	5인 이상 상용직	2017년	6,470	18,201	21,577	35.5	30.0
		2018년	7,530	19,111	22,656	39.4	33.2
		2020년	10,000	21,069	24,978	47.5	4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 이상 풀타임	2017년	6,470	15,792	17,934	41.0	36.1
		2018년	7,530	16,581	18,831	45.4	40.0
		2020년	10,000	18,281	20,761	54.7	48.2
	5인 이상 풀타임	2017년	6,470	16,816	19,490	38.5	33.2
		2018년	7,530	17,657	20,464	42.6	36.8
		2020년	10,000	19,467	22,562	51.4	44.3

주: 매년 임금인상률 5% 가정. 통상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

최저임금 적정수준¹⁾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머리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는 주요 정당의 다섯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문재인(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고,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을 공약한 점만 차이가 날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끌어 올리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6% 또는 1,180원씩 인상해야 한다.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7,530원을 의결했다.²⁾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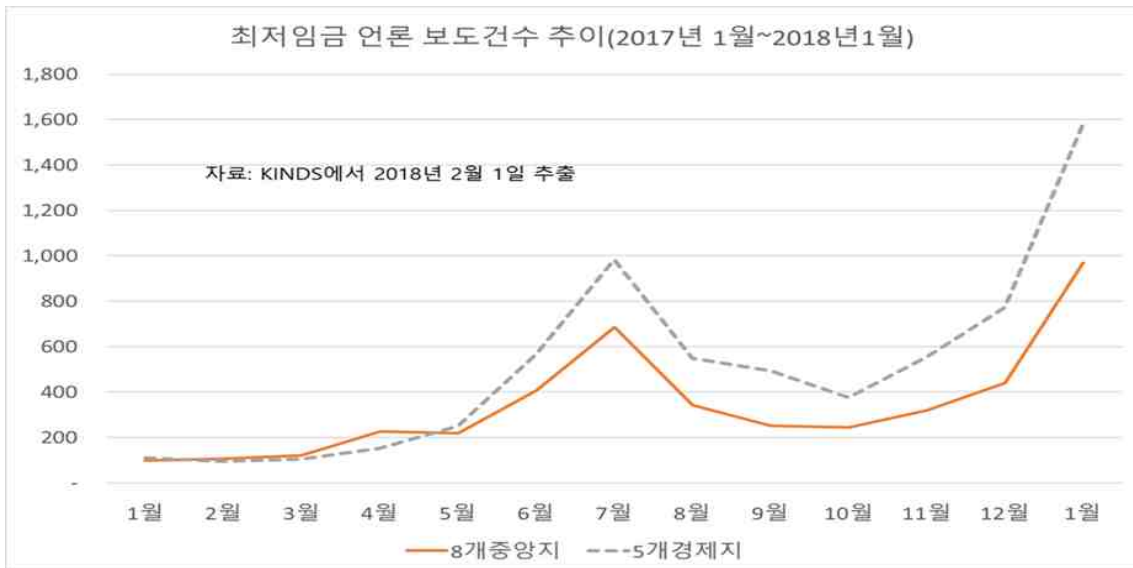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그동안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제지 등 보수언론이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5개 경제지가 쏟아낸 최저임금 기사는 2017년 7월 9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1,579건으로 최고치를 갱신

1) 이 글은 민주노총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글로,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쪽 최종안은 7,530원이고 사용자 쪽 최종안은 7,300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15:12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했다. 특히 서울경제신문은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사를 1,817건 쏟아냈는데, 2018년 1월 한 달 동안 551건의 기사를 내보냈다(김유선 2018, <그림 1> 참조).

<그림 1> 최저임금 언론 보도건수 추이(2017.1~2018.1, 단위:건)



이들 경제지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부정적 기사를 쏟아냈다. 마치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되더라도 한 양, 몇몇 사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때리기’를 반복했다. 과연 그럴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는 별도의 과제로 넘기고, 여기서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적정수준인지, 과도한 수준인지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 비교한다. 제4절에서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과 기준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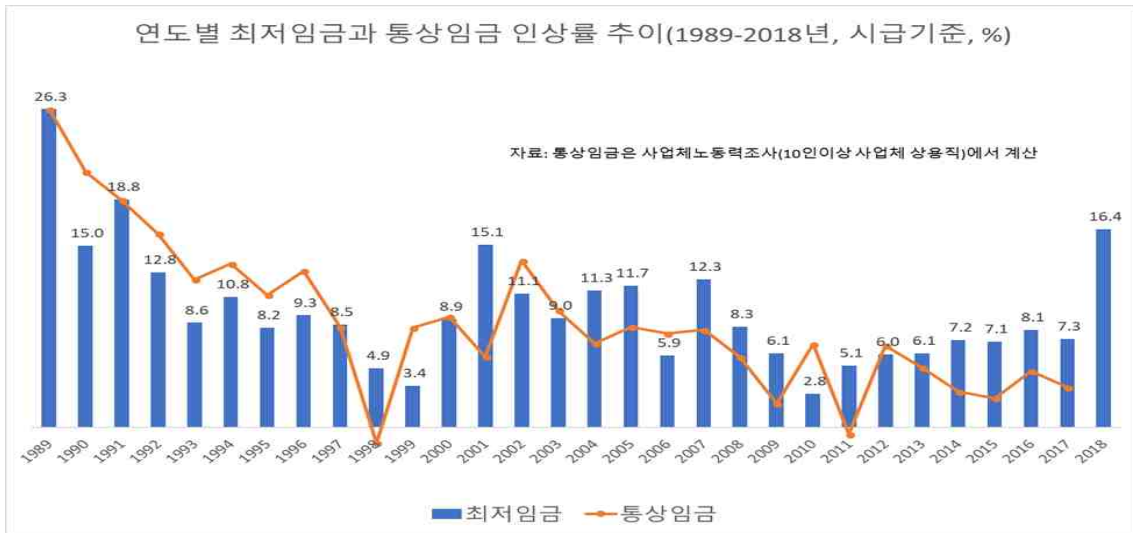
2. 한국의 최저임금 추이

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지난 30년 동안(1989~2017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5%(월환산액 기준 9.0%)이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8.8%(월 8.1%)였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0%,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은 7.4%였다(<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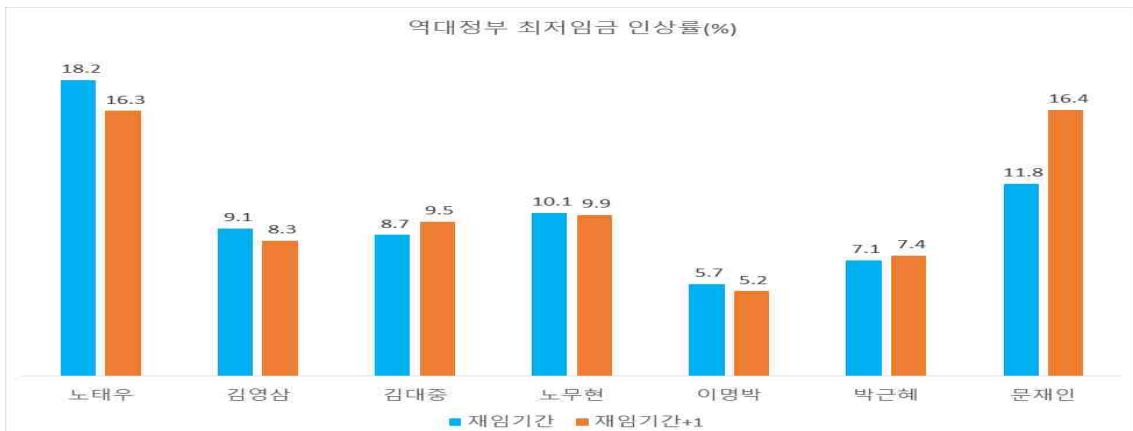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외환 위기 이전인 1990년대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쳤다(<그림 2> 참조).

<그림 2> 연도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률 추이(1989~2018년, 단위:%)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은 ‘노태우(18.2%)>문재인(11.8%)>노무현(10.1%)>김영삼(9.1%)>김대중(8.7%)>박근혜(7.1%)>이명박(5.7%)’ 순이다. 한데 새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은 이전 정부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새 정부 2년차부터 다음 정부 1년차까지를 재임기간으로 하여 역대 정부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을 계산하면, ‘문재인(16.4%)>노태우(16.3%)>노무현(9.9%)>김대중(9.5%)>김영삼(8.3%)>>박근혜(7.4%)>이명박(5.2%)’ 순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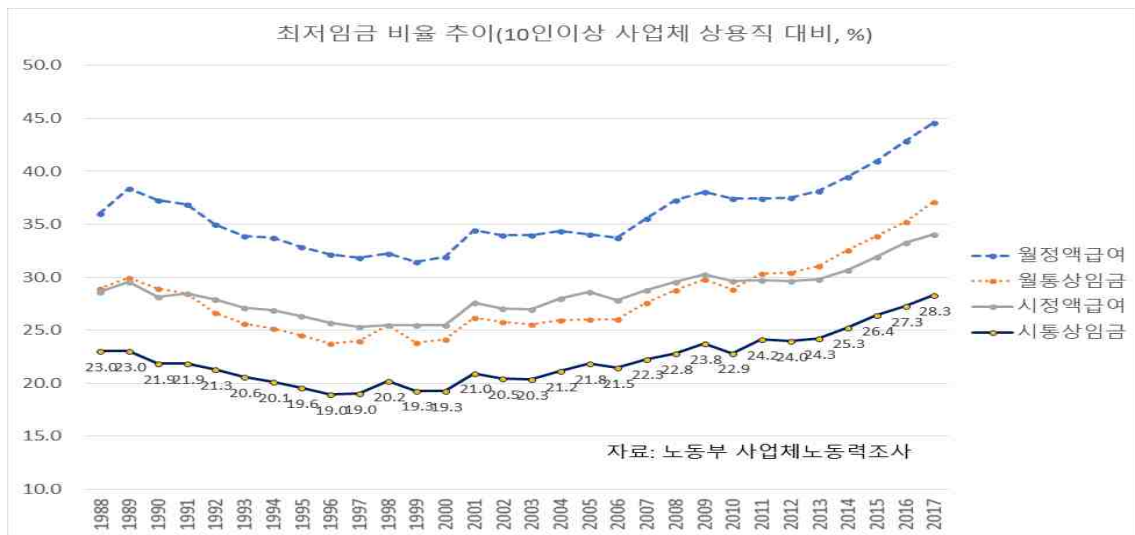
<그림 3> 역대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단위:%)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비율 추이를 보려면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201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월정액급여(44.6%)>월통상임금(37.1%)>시간당 정액급여(34.0%)>시간당 통상임금(28.3%)’ 순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에서는 일치한다(<그림 4>와 <부표 2> 참조).

<그림 4>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3.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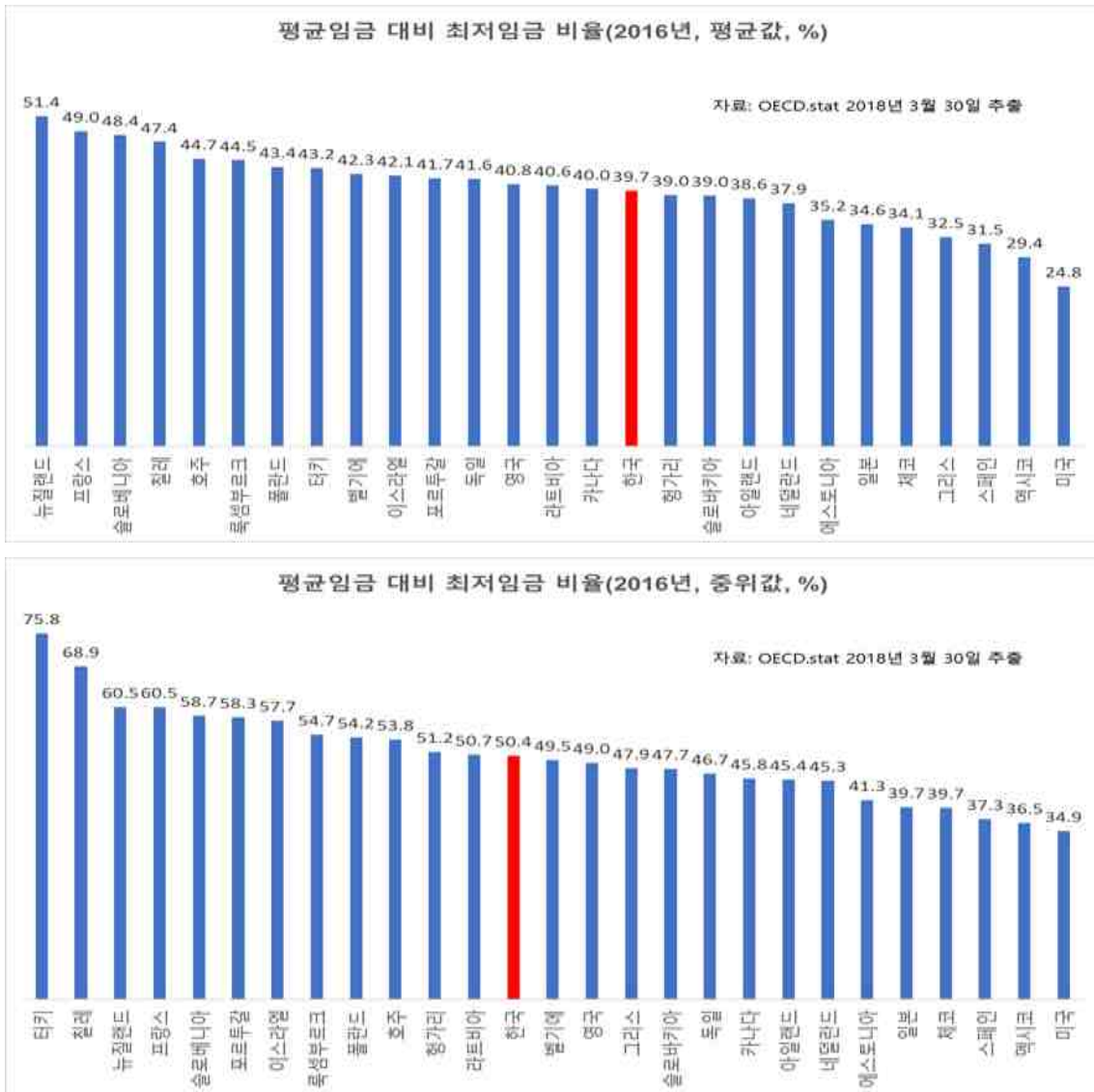
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6.5%에서 2016년 39.9%로 높아졌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5.0%에서 50.5%로 높아졌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ILO, 2008).

뉴질랜드(51.4%)와 프랑스(49.0%)가 가장 높고, 멕시코(29.4%)와 미국(24.8%)이 가장 낮다. 한국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6년 39.7%이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7개 회원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0.4%로 27개 회원국 중 13위이다(<그림 5> 참조).³⁾

3) OECD 35개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

<그림 5>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6년, 단위:%)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인 것은, 정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는 29.1~37.4%(20~26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42.0~47.1%(17~21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1> 참조).

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개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태리는 헌법(제 36조)의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모든 노동자는 관련 부문 단체협약 중 가장 낮은 임금률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노동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함에 따라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Schulten 2008). 이들 나라는 모두 임금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따라서 비교대상을 35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는 24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21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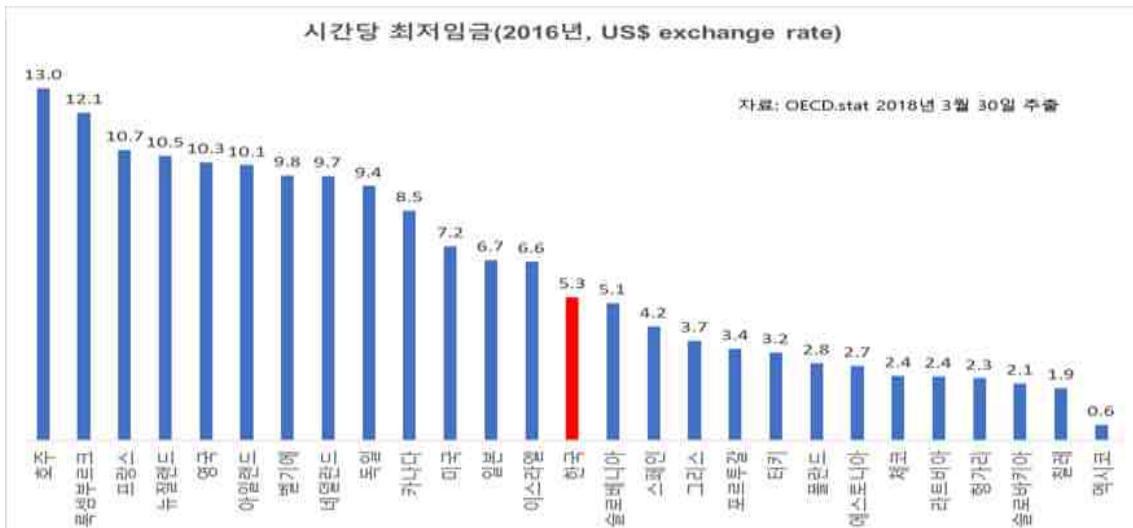
〈표 1〉 2016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순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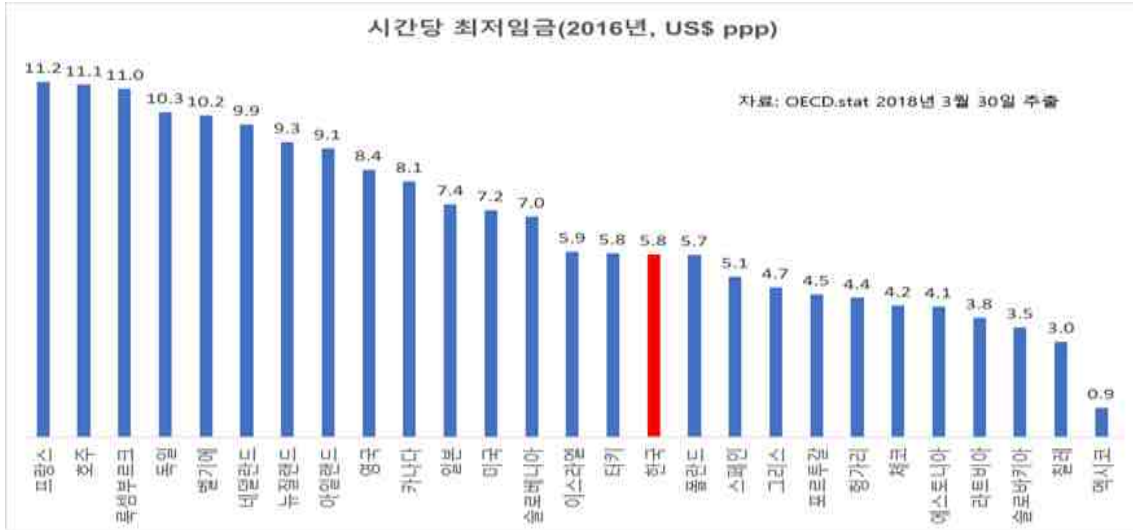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인이상 상용직		1인이상 풀타임		5인이상 풀타임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대비	34.9	29.1	40.0	34.9	37.4	32.0
	중위값대비			50.7	47.1	46.8	42.0
순위	평균값대비	21	26	16	21	20	24
	중위값대비			13	17	17	21

나. 시간당 최저임금

2016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2달러로 한국(5.3달러)보다 0.9달러 높다. 한국은 27개 회원국 중 14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호주(13.0달러), 룩셈부르크(12.1달러), 프랑스(10.7달러), 뉴질랜드(10.5달러), 영국(10.3달러), 아일랜드(10.1달러) 여섯 나라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슬로베니아(5.1달러), 스페인(4.2달러), 그리스(3.7달러) 등 열세 나라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하면 한국은 5.8달러로, OECD 평균(6.7달러)에 못 미친다. 27개 회원국 중 16위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에 슬로베니아와 터키 두 나라가 추가된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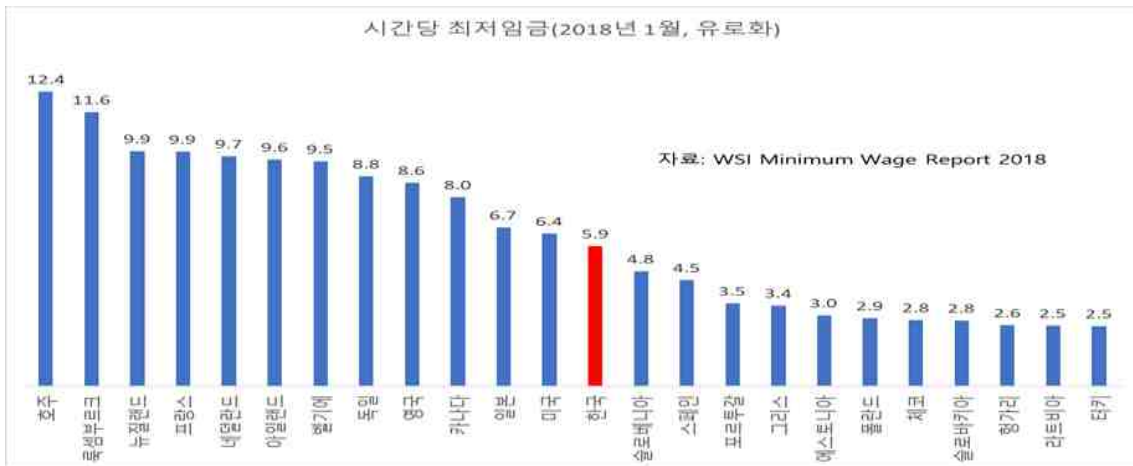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6년, 단위:US\$)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다는 2018년 1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5.9유로다. 조사대상 24개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를 사용해도 5.8유로로 14위이다. 이에 비해 호주는 12.4유로(구매력평가지수로는 9.5유로)로 가장 높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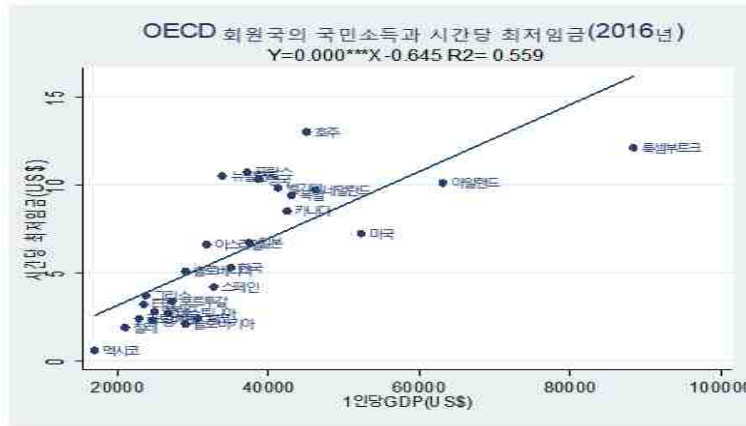
<그림 7>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8년 1월, 단위: 유로화)



다.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4만5천 달러인 호주는 최저임금이 13달러인데, 국민소득이 5만2천 달러인 미국의 최저임금은 7.2달러밖에 안 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시간당 최저임금(2016년, 단위: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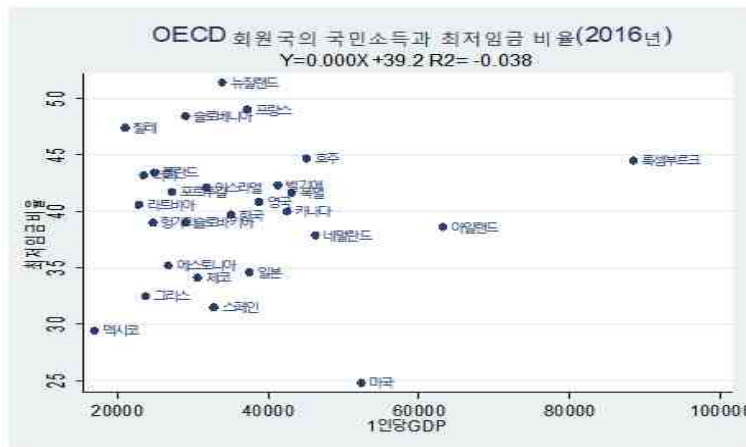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그림 9>에서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칠레, 호주, 룩셈부르크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일본, 체코,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는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그림 9>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비율(2016년, 단위: 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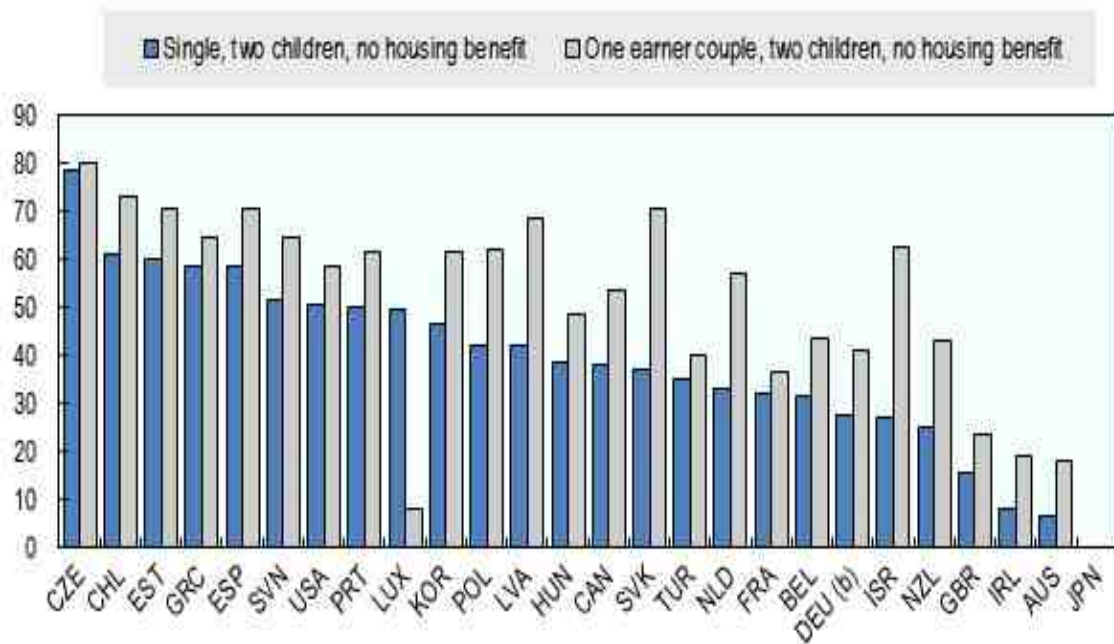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라. 최저임금과 빈곤선

OECD(2015)는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가구 순소득 중위값의 50%)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부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3인 가구와 4인 가구 모두 빈곤선을 넘어서나. 호주는 6.5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7.9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나. 아일랜드는 8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8.8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나.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풀타임 노동해도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지 못 한다. 한국은 주46.4시간 일해야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61.6시간 일해야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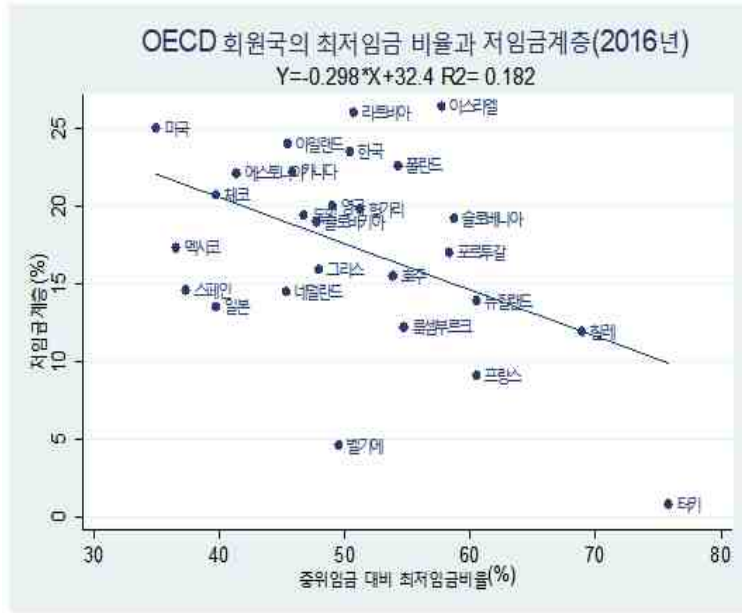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Ch.1, Figure 1.16.

마. 최저임금과 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저임금계층이 적다. 즉 최저임금과 저임금계층 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그림 11> 참조). 이는 최저임금이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말해준다(Metcalf, 1999).

〈그림 1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비율과 저임금계층(2016년, 단위: %)



자료: OECD.stat

4.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가.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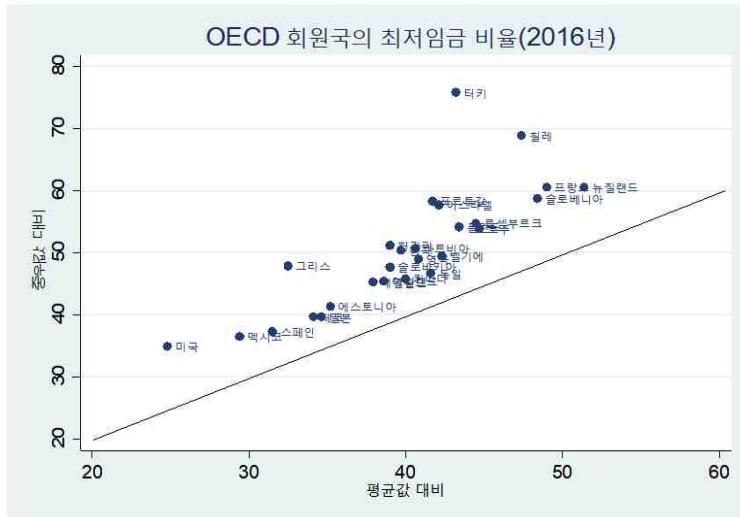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평균임금(average wage)은 평균값(mean)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중위값(median)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평균값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면 되고, 중위값으로 계산할 때는 저임금 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나 유럽연합처럼 ‘중위임금의 60%’를 목표로 하면 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보다 ‘평균임금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① 임금 수준 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가 평균값만 조사·발표하고, ② 한국에서 중위값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학계 일부에서는 ‘중위임금의 50%’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면 저임금 계층인데, ‘중위임금의 1/2’를 최저임금의 목표로 삼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 일소’라는 최저임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임금 계층이 전체 노동자의 25%에 이르는 상태에서 ‘중위임금의 50%’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최저임금의 목표를 맞추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국은 2016년 최저임금이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9.7%, 중위임금의 50.4%로 10.7%p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평균임금의 43.2%, 중위임금의 75.8%로 33.6%p 차이가 난다. 이는 터키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2>와 <부표 4> 참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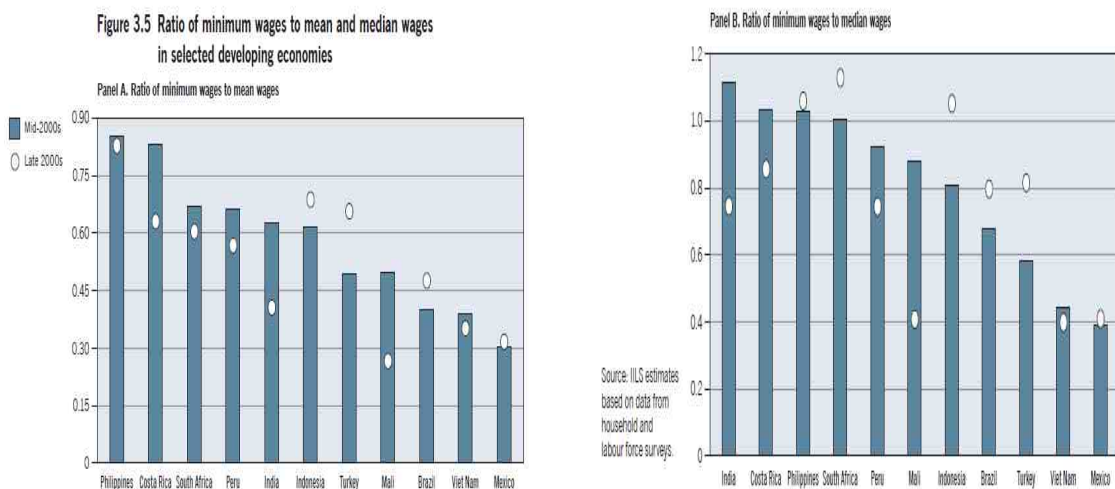
<그림 12> OECD 회원국의 평균값과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6년, 단위:%)



자료: OECD.stat

11개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mean)의 28~83%이고, 중위임금(median)의 40~110%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median)의 100%보다 높은데, 이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ILO, 2013).

<그림 13> 11개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평균값과 중위값



자료: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그림 3.5.

4) 그림에도 <부표 4>에서 저임금 계층이 0.8%라는 터키 정부의 보고는 신뢰하기 어렵다.

2) 비교대상과 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자료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형식 논리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자는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② 저임금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직, 일용직 임금은 포함하면서 고임금 부문인 공무원과 교원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굳이 ‘5인 미만 사업체, 임시 일용직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가⁵⁾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 유럽연합 각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를 OECD에 보고하고 있다(이영면, 2015).

3) 시간당 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할 뿐, 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월환산임금을 구한 뒤 참고지표로 활용할 뿐이다. 2013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월 165.6시간인데도 209시간을 곱하는 것은, 한 달 177시간 근무에 유급휴휴 4일 32시간을 더해 209시간 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용직, 호출근로 등은 유급휴휴수당 적용대상조차 아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시간당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 각종 임금조사는 임금총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임금구성항목 중 정액급여를 사용한 것은, 정상근로시간 일해서 받는 통상임금 개념에 정액급여가 가장 가깝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말 대법원 판례 뒤로는 통상임금을 ‘정액급여+(고정적) 특별급여’로 정의하고, 정액급여 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임금을 정액급여보다 적은 ‘기본급+통상적수당’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5) OECD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풀타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정규직(파트타임)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난다.

5) 소결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정액급여) 평균값을 사용하고, 노동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 2>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7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8,201원이고 통상임금은 2만 1,577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은 정액급여의 35.5%, 통상임금의 30.0%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2017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값)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평균값	5인이상	2,936	3,480	18,201	21,577	46.1	38.9	35.5	30.0
	10인이상	3,032	3,643	18,947	22,766	44.6	37.1	34.1	28.4
	30인이상	3,132	3,859	19,849	24,456	43.2	35.0	32.6	26.5
	5~299인	2,772	3,148	17,025	19,339	48.8	43.0	38.0	33.5
	5~9인	2,469	2,690	14,721	16,039	54.8	50.3	43.9	40.3
	10~29인	2,790	3,123	16,881	18,895	48.5	43.3	38.3	34.2
	30~99인	2,839	3,249	17,680	20,228	47.6	41.6	36.6	32.0
	100~299인	2,972	3,537	18,941	22,546	45.5	38.2	34.2	28.7
	300인이상	3,598	4,822	23,156	31,027	37.6	28.0	27.9	20.9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주: 1)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35만 2,23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이에 비해 <표 3>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7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43만원이고 중위값은 200만원이다. 2017년 월환산 최저임금 135만 2,23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55.7%, 중위값의 67.7%이다. 따라서 이미 평균임금의 50%(또는 중위임금의 2/3) 목표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낮다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배치된다.

〈표 3〉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2017년 6월)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전규모	평균값	전체	2,427	2,731	15,506	17,352	55.7	49.5	41.7	37.3
		5인미만	1,774	1,825	12,115	12,417	76.2	74.1	53.4	52.1
		5-29인	2,367	2,552	14,858	15,965	57.1	53.0	43.5	40.5
		30-299인	2,634	2,971	16,373	18,412	51.3	45.5	39.5	35.1
		300인이상	3,527	4,587	22,408	28,900	38.3	29.5	28.9	22.4
		정규직	2,761	3,175	16,275	18,777	49.0	42.6	39.8	34.5
		비정규직	1,593	1,621	13,558	13,741	84.9	83.4	47.7	47.1
		풀타임 시간제	2,648 1,081	3,001 1,086	15,792 13,776	17,934 13,830	51.1 125.1	45.1 124.5	41.0 47.0	36.1 46.8
	중위값	전체	1,996	2,072	12,000	12,748	67.7	65.3	53.9	50.8
		5인미만	1,500	1,500	9,524	9,615	90.1	90.1	67.9	67.3
		5-29인	1,970	2,004	11,905	12,494	68.6	67.5	54.3	51.8
		30-299인	2,164	2,414	13,095	14,653	62.5	56.0	49.4	44.2
		300인이상	3,032	4,065	18,958	25,326	44.6	33.3	34.1	25.5
		정규직	2,234	2,483	12,949	14,262	60.5	54.5	50.0	45.4
		비정규직	1,300	1,312	9,916	10,000	104.0	103.0	65.2	64.7
		풀타임 시간제	2,100 800	2,300 800	12,351 10,000	13,341 10,000	64.4 169.0	58.8 169.0	52.4 64.7	48.5 64.7
5인 이상	평균값	5인이상	2,677	3,077	16,795	19,228	50.5	43.9	38.5	33.6
		정규직	2,938	3,437	17,466	20,488	46.0	39.3	37.0	31.6
		비정규직	1,738	1,785	14,364	14,664	77.8	75.8	45.0	44.1
		풀타임 시간제	2,817 1,300	3,258 1,308	16,816 16,589	19,490 16,670	48.0 104.0	41.5 103.4	38.5 39.0	33.2 38.8
	중위값	5인이상	2,176	2,392	13,286	14,641	62.1	56.5	48.7	44.2
		정규직	2,408	2,709	14,129	15,873	56.2	49.9	45.8	40.8
		비정규직	1,462	1,488	10,523	10,803	92.5	90.9	61.5	59.9
		풀타임 시간제	2,289 920	2,519 930	13,393 12,500	14,881 12,500	59.1 147.0	53.7 145.5	48.3 51.8	43.5 51.8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주: 1)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35만 2,23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나. 시중노임단가 8천 6백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 <표 4>에서 2017년 시급 8,612원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통상임금 평균값의 39.9%고, 정액급여 평균값의 47.3%다.

<표 4> 중소(20~299인) 제조업 생산직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 시급

연도	보통인부 시급(원)	5인 이상 시간당 임금 평균		보통인부 시급 / 시간당 임금 평균	
		정액급여(원)	통상임금(원)	정액급여(%)	통상임금(%)
1999	3,065	5,989	7,754	51.2	39.5
2000	3,131	6,515	8,456	48.1	37.0
2001	3,361	6,901	8,907	48.7	37.7
2002	3,465	7,756	10,028	44.7	34.5
2003	3,607	8,482	11,030	42.5	32.7
2004	3,914	9,062	11,734	43.2	33.4
2005	4,188	9,895	12,704	42.3	33.0
2006	4,772	10,763	13,699	44.3	34.8
2007	5,499	12,671	15,747	43.4	34.9
2008	5,849	12,181	15,530	48.0	37.7
2009	6,179	12,634	15,883	48.9	38.9
2010	6,645	13,276	16,940	50.1	39.2
2011	7,232	13,893	16,849	52.1	42.9
2012	7,530	14,772	17,925	51.0	42.0
2013	7,916	15,567	18,807	50.9	42.1
2014	8,019	16,210	19,357	49.5	41.4
2015	8,209	16,597	19,766	49.5	41.5
2016	8,330	17,285	20,694	48.2	40.3
2017	8,612	18,201	21,577	47.3	39.9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2013년부터는 보통인부를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명칭 변경했음.

다.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a

생산성임금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 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7%이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은 연평균 5.2%이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0%로 매년 0.2~1.7%p 덜 올랐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4.1%로 매년 1.1~2.6%p 덜 올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분배 구조의 악화로 이어져,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6%에서 2017년 84.5%로 7.1%p 떨어졌다(<부표 3> 참조).

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얼마가 될까? <표 5>는 매년 임금인상률이 5%라고 가정할 때 추정 결과이다.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통상임금 평균값의 40.0%이다. 노동부가 선호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8.2%이고, 5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4.3%이다.

<표 5>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정치

구분	연도	시간당 임금(원)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대비	통상임금 대비	
사업체 노동력조사	5인 이상 상용직	2017년	6,470	18,201	21,577	35.5	30.0
		2018년	7,530	19,111	22,656	39.4	33.2
		2019년	8,700	20,066	23,789	43.4	36.6
		2020년	10,000	21,069	24,978	47.5	40.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인 이상 풀타임	2017년	6,470	15,792	17,934	41.0	36.1
		2018년	7,530	16,581	18,831	45.4	40.0
		2019년	8,700	17,411	19,772	50.0	44.0
		2020년	10,000	18,281	20,761	54.7	48.2
	5인 이상 풀타임	2017년	6,470	16,816	19,490	38.5	33.2
		2018년	7,530	17,657	20,464	42.6	36.8
		2019년	8,700	18,540	21,488	46.9	40.5
		2020년	10,000	19,467	22,562	51.4	44.3

주: 매년 임금인상률 5% 가정. 통상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

참고문헌

-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 김유선(2015),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 이인영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 자료집.
- 김유선(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통권 제87호).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원자료.
- 이영면(2015),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이인영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 자료집.
- 최저임금위원회(2017), 『임금실태 등 분석』 .
- ILO(2008), *Global Wage Report 2008/9 :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Towards policy coherence.*
-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 KOSIS
- Metcalf(1999), "The British National Minimum W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171-201.
- OECD(2015), *Employment Outlook 2015.*
- OECD.stat
- Schulten(2008), “Towards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Fair Wages and Soci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4(4): 421-439.
- WSI(2018), *Minimum Wage Report.*

〈부표 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요 경제지표 추이

연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률		주요 경제지표(%)			10인이상 통상임금	상용직 인상률
	시간급 (원)	월 노동 시간	월 환산액 (천원)	시간급 (%)	월환산 액(%)	경제 성장률	성장률 +물가 상승률	성장률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시간급 (%)	월임금 (%)
1988	475	240	114			11.9	19.0	15.9	16.9	16.5
1989	600	240	144	26.3	26.3	7.0	12.7	8.6	26.3	22.3
1990	690	240	166	15.0	15.0	9.8	18.4	15.4	21.1	19.1
1991	820	235	193	18.8	16.4	10.4	19.7	16.6	18.8	18.2
1992	925	226	209	12.8	8.5	6.2	12.4	10.5	16.0	15.7
1993	1,005	226	227	8.6	8.6	6.8	11.6	10.4	12.2	12.9
1994	1,113	226	252	10.8	10.8	9.2	15.5	12.3	13.5	13.1
1995	1,205	226	272	8.2	8.2	9.6	14.1	11.2	11.0	11.0
1996	1,317	226	298	9.3	9.3	7.6	12.5	10.4	12.9	12.7
1997	1,428	226	323	8.5	8.5	5.9	10.3	8.6	8.3	7.5
1998	1,498	226	339	4.9	4.9	-5.5	2.0	8.0	-1.3	-1.4
1999	1,550	226	350	3.4	3.4	11.3	12.1	10.3	8.2	10.6
2000	1,688	226	382	8.9	8.9	8.9	11.2	6.8	9.1	7.5
2001	1,943	226	439	15.1	15.1	4.5	8.6	6.5	5.8	6.2
2002	2,158	226	488	11.1	11.1	7.4	10.2	7.3	13.8	12.9
2003	2,353	226	532	9.0	9.0	2.9	6.4	6.5	9.7	9.8
2004	2,620	220	576	11.3	8.3	4.9	8.5	6.4	6.9	6.7
2005	2,927	209	612	11.7	6.2	3.9	6.7	6.0	8.3	6.1
2006	3,100	209	648	5.9	5.9	5.2	7.4	5.9	7.8	5.6
2007	3,480	209	727	12.3	12.3	5.5	8.0	6.4	8.1	5.9
2008	3,770	209	788	8.3	8.3	2.8	7.5	6.6	5.8	4.0
2009	4,000	209	836	6.1	6.1	0.7	3.5	3.8	2.0	2.4
2010	4,110	209	859	2.8	2.8	6.5	9.4	8.0	6.9	6.1
2011	4,320	209	903	5.1	5.1	3.7	7.7	5.7	-0.6	-0.1
2012	4,580	209	957	6.0	6.0	2.3	4.5	2.7	6.8	5.9
2013	4,860	209	1,016	6.1	6.1	2.9	4.2	2.8	4.9	3.9
2014	5,210	209	1,089	7.2	7.2	3.3	4.6	2.2	3.0	2.4
2015	5,580	209	1,166	7.1	7.1	2.8	3.5	2.4	2.4	2.9
2016	6,030	209	1,260	8.1	8.1	2.9	3.9	3.0	4.7	4.0
2017	6,470	209	1,352	7.3	7.3	3.1	5.0	3.8	3.3	1.8
2018	7,530	209	1,574	16.4	16.4					
1989-2017				9.5	9.0	5.3	9.0	7.4	8.8	8.1
2000-2017				8.3	7.8	4.1	6.7	5.2	6.0	5.2
노태우				18.2	16.5	8.4	15.8	12.8	20.6	18.8
김영삼				9.1	9.1	7.8	12.8	10.6	11.6	11.4
김대중				8.7	8.7	5.3	8.8	7.8	7.1	7.2
노무현				10.1	8.3	4.5	7.4	6.2	8.1	6.8
이명박				5.7	5.7	3.2	6.5	5.4	4.2	3.6
박근혜				7.1	7.1	3.0	4.0	2.6	3.7	3.3

자료: KOSIS

주: 1994~2005년 최저임금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평균 최저임금을 재계산했음. 통상임금은 '정액급여+특별급여'로 명목임금 기준임.

〈부표 2〉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연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민소득통계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1인 이상 비정규직 포함				1인당월 국민총 소득	피용자1 인당월 임금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1988	36.1	29.0	28.6	23.0									40.2	22.2
1989	38.4	29.9	29.6	23.0									45.0	25.5
1990	37.3	28.9	28.2	21.9									43.2	25.2
1991	36.9	28.5	28.5	21.9									42.0	25.2
1992	35.0	26.7	27.9	21.3									40.2	24.5
1993	33.9	25.7	27.2	20.6									38.9	23.5
1994	33.7	25.2	26.9	20.1									36.9	23.2
1995	32.9	24.5	26.3	19.6									34.5	21.8
1996	32.2	23.8	25.7	19.0									33.9	21.2
1997	31.9	24.0	25.3	19.0									33.8	22.1
1998	32.2	25.5	25.5	20.2									36.4	22.4
1999	31.4	23.9	25.5	19.3	31.8	24.6	25.9	20.0					34.4	22.4
2000	31.9	24.2	25.5	19.3	32.3	24.9	25.9	20.0					34.1	23.5
2001	34.5	26.2	27.6	21.0	34.9	27.1	28.2	21.8					36.5	25.2
2002	34.0	25.8	27.1	20.5	34.6	26.8	27.8	21.5					36.7	26.4
2003	33.9	25.6	27.0	20.3	34.7	26.7	27.7	21.3					37.8	26.8
2004	34.4	26.0	28.0	21.2	35.2	27.2	28.9	22.3					38.0	27.7
2005	34.1	26.0	28.6	21.8	34.8	27.1	29.6	23.0					38.8	27.8
2006	33.8	26.1	27.8	21.5	34.6	27.2	28.8	22.6	39.7	33.1	34.3	28.6	39.1	28.5
2007	35.5	27.6	28.8	22.3	36.5	28.9	30.0	23.7	42.0	35.2	35.5	29.8	40.9	30.7
2008	37.3	28.8	29.6	22.8	38.3	30.0	30.9	24.3	43.1	36.4	35.6	30.1	42.0	32.0
2009	38.0	29.8	30.3	23.8	39.1	31.1	31.7	25.2	45.2	38.6	38.7	33.0	43.1	33.2
2010	37.4	28.9	29.6	22.9	38.4	30.1	31.0	24.3	45.1	38.9	38.0	32.8	40.3	32.9
2011	37.4	30.4	29.7	24.2	38.6	31.8	31.1	25.6	45.8	39.3	37.2	31.9	40.4	33.4
2012	37.5	30.4	29.6	24.0	38.8	31.9	31.0	25.6	46.1	40.1	35.8	31.1	41.4	34.3
2013	38.1	31.1	29.8	24.3	39.4	32.6	31.2	25.8	47.5	41.1	35.5	30.8	42.7	35.6
2014	39.5	32.6	30.6	25.3	40.9	34.3	32.1	26.9	49.1	42.7	35.4	30.9	44.5	37.5
2015	41.0	33.9	32.0	26.4	42.4	35.6	33.6	28.2	51.2	45.1	40.1	35.5	45.5	38.9
2016	42.9	35.2	33.3	27.3	44.4	37.1	34.9	29.1	53.4	47.0	40.8	36.1	47.1	40.5
2017 2018	44.6	37.1	34.0	28.3	46.1	38.9	35.5	30.0	55.7	49.5	41.7	37.3	48.2	42.1
1989~2017	35.9	28.0	28.5	22.2	37.7	30.2	30.3	24.3	46.2	39.8	37.0	31.9	39.9	28.8
2000~2017	37.0	29.2	29.4	23.2	38.0	30.5	30.6	24.5	46.2	39.8	37.0	31.9	41.0	32.1
노태우	36.9	28.5	28.5	22.0									42.6	25.1
김영삼	32.9	24.6	26.3	19.7									35.6	22.4
김대중	32.8	25.1	26.2	20.0	33.4	25.8	26.9	20.8					35.6	24.0
노무현	34.3	26.3	28.1	21.4	35.2	27.4	29.0	22.6	40.9	34.2	34.9	29.2	38.9	28.3
이명박	37.5	29.7	29.8	23.5	38.6	31.0	31.1	25.0	45.1	38.7	37.1	31.8	41.4	33.2
박근혜	40.4	33.2	31.4	25.8	41.8	34.9	33.0	27.5	50.3	44.0	38.0	33.3	44.9	38.1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06년까지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주: 통상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

〈부표 3〉 연도별 임금수준과 인상률 추이

연도	월 명목임금(천원)				명목임금 인상률(%)				실질임금 인상률(%)			
	10인이 상상용 직	5인 이상상 용직	피용자 보수	국민총 소득	10인이 상상용 직	5인 이상상 용직	피용자 보수	국민총 소득	10인이 상상용 직	5인 이상상 용직	피용자 보수	국민총 소득
1988	446		513	283			17.7	19.2				
1989	541		564	320	21.3		10.0	12.9	14.8		4.0	6.9
1990	642		657	384	18.7		16.4	20.0	9.3		7.2	10.5
1991	755		765	459	17.6		16.5	19.6	7.6		6.6	9.4
1992	869		854	520	15.1		11.6	13.2	8.4		5.1	6.6
1993	975		966	583	12.2		13.1	12.3	7.1		7.9	7.1
1994	1,099		1,084	681	12.7		12.2	16.7	6.1		5.6	9.9
1995	1,222		1,251	789	11.2		15.3	15.9	6.4		10.4	10.9
1996	1,368		1,401	877	11.9		12.0	11.1	6.7		6.8	5.9
1997	1,463		1,460	956	6.9		4.2	9.0	2.4		-0.2	4.4
1998	1,427		1,514	931	-2.5		3.7	-2.6	-9.3		-3.5	-9.4
1999	1,599	1,544	1,564	1,019	12.1		3.3	9.4	11.1		2.4	8.6
2000	1,727	1,668	1,626	1,118	8.0	8.0	4.0	9.7	5.6	5.6	1.7	7.3
2001	1,825	1,752	1,743	1,202	5.7	5.0	7.2	7.6	1.5	0.9	3.0	3.3
2002	2,036	1,948	1,850	1,327	11.6	11.2	6.1	10.4	8.6	8.2	3.3	7.4
2003	2,228	2,127	1,981	1,406	9.4	9.2	7.1	5.9	5.7	5.5	3.5	2.3
2004	2,373	2,255	2,077	1,515	6.5	6.0	4.8	7.8	2.8	2.3	1.2	4.1
2005	2,525	2,404	2,203	1,578	6.4	6.6	6.1	4.2	3.6	3.7	3.2	1.4
2006	2,667	2,542	2,275	1,656	5.6	5.7	3.3	4.9	3.3	3.4	1.0	2.6
2007	2,793	2,716	2,371	1,780	4.7	6.8	4.2	7.5	2.1	4.2	1.6	4.9
2008	2,940	2,802	2,461	1,876	5.2	3.2	3.8	5.4	0.5	-1.4	-0.8	0.7
2009	3,001	2,863	2,517	1,942	2.1	2.2	2.3	3.5	-0.7	-0.5	-0.5	0.7
2010	3,196	3,047	2,612	2,130	6.5	6.4	3.8	9.7	3.5	3.4	0.8	6.6
2011	3,176	3,019	2,701	2,237	-0.6	-0.9	3.4	5.0	-4.5	-4.8	-0.6	1.0
2012	3,352	3,178	2,787	2,310	5.6	5.3	3.2	3.3	3.3	3.0	1.0	1.1
2013	3,476	3,299	2,856	2,379	3.7	3.8	2.5	3.0	2.4	2.5	1.2	1.7
2014	3,575	3,378	2,907	2,448	2.9	2.4	1.8	2.9	1.6	1.1	0.5	1.6
2015	3,693	3,490	3,000	2,562	3.3	3.3	3.2	4.7	2.6	2.6	2.5	3.9
2016	3,839	3,623	3,115	2,677	3.9	3.8	3.8	4.5	2.9	2.8	2.8	3.5
2017	3,902	3,707	3,209	2,803	1.7	2.3	3.0	4.7	-0.3	0.4	1.1	2.7
2018												
1989~2017	2,217	2,703	1,944	1,464	7.9	5.0	6.6	8.3	4.0	2.4	2.7	4.4
2000~2017	2,907	2,768	2,461	1,942	5.1	5.0	4.1	5.8	2.5	2.4	1.5	3.1
노태우	702		710	421	18.2		13.6	16.4	10.0		5.7	8.3
김영삼	1,225		1,232	777	11.0		11.4	13.0	5.7		6.1	7.6
김대중	1,723	1,728	1,659	1,120	7.0	8.1	4.9	6.9	3.5	4.9	1.4	3.4
노무현	2,517	2,409	2,181	1,587	6.5	6.9	5.1	6.1	3.5	3.8	2.1	3.0
이명박	3,133	2,982	2,616	2,099	3.8	3.2	3.3	5.4	0.4	-0.1	-0.0	2.0
박근혜	3,646	3,447	2,970	2,517	3.4	3.3	2.8	3.8	2.4	2.2	1.7	2.7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06년까지 매월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부표 4〉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비율		시간당 최저임금				저임금 계층 (2015년%)	임금 불평등 (p0010,2015 년배)	1인당 GDP (2016년 US\$)
	(2016년%)		(2016년)		(2018년월)				
	평균임금대비	중위임금대비	US\$ 환율	US\$ PPP	EURO 환율	EURO PPP			
호주	44.7	53.8	13.0	11.1	12.4	9.5	15.5	3.29	45,087
오스트리아							15.9	3.32	43,126
벨기에	42.3	49.5	9.8	10.2	9.5	8.7	4.6	2.36	41,273
캐나다	40.0	45.8	8.5	8.1	8.0	6.9	22.2	3.71	42,499
칠레	47.4	68.9	1.9	3.0			11.9	4.32	21,007
체코	34.1	39.7	2.4	4.2	2.8	4.2	20.7	3.57	30,643
덴마크							8.2	2.56	45,026
에스토니아	35.2	41.3	2.7	4.1	3.0	3.9	22.1	3.78	26,726
핀란드							7.8	2.56	38,591
프랑스	49.0	60.5	10.7	11.2	9.9	9.2	9.1	2.81	37,208
독일	41.6	46.7	9.4	10.3	8.8	8.6	19.4	3.52	43,109
그리스	32.5	47.9	3.7	4.7	3.4	3.9	15.9	3.17	23,748
헝가리	39.0	51.2	2.3	4.4	2.6	4.3	19.8	3.72	24,716
아이슬란드							14.9	2.99	45,118
아일랜드	38.6	45.4	10.1	9.1	9.6	7.7	24.0	3.99	63,131
이스라엘	42.1	57.7	6.6	5.9			26.4	7.22	31,833
이태리							7.6	2.17	33,546
일본	34.6	39.7	6.7	7.4	6.7	6.3	13.5	2.94	37,490
한국	39.7	50.4	5.3	5.8	5.9	5.8	23.5	4.59	35,014
라트비아	40.6	50.7	2.4	3.8	2.5	3.6	26.0	4.00	22,866
룩셈부르크	44.5	54.7	12.1	11.0	11.6	9.4	12.2	3.15	88,429
멕시코	29.4	36.5	0.6	0.9			17.3	3.88	16,969
네덜란드	37.9	45.3	9.7	9.9	9.7	8.8	14.5	3.02	46,262
뉴질랜드	51.4	60.5	10.5	9.3	9.9	7.8	13.9	2.97	33,917
노르웨이							2.55		59,746
폴란드	43.4	54.2	2.8	5.7	2.9	5.3	22.6	4.03	24,897
포르투갈	41.7	58.3	3.4	4.5	3.5	4.2	17.0	3.85	27,220
슬로바키아	39.0	47.7	2.1	3.5	2.8	4.1	19.0	3.56	29,040
슬로베니아	48.4	58.7	5.1	7.0	4.8	6.0	19.2	3.33	29,012
스페인	31.5	37.3	4.2	5.1	4.5	4.9	14.6	3.12	32,777
스웨덴									45,095
스위스							10.1	2.72	54,656
터키	43.2	75.8	3.2	5.8	2.5	5.2	0.8	3.53	23,469
영국	40.8	49.0	10.3	8.4	8.6	7.6	20.0	3.50	38,747
미국	24.8	34.9	7.2	7.2	6.4	5.8	25.0	5.04	52,322
OECD 평균	39.9	50.5	6.2	6.7	6.3	6.3	16.2	3.5	38,123

자료: OECD.stat 2018년 3월 30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